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17
------	------

2023. 12. 4.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3. 11. 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23. 12. 4.) 상정,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가. 제안이유

- 민선8기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총정원 변동 없이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반’ (45급)을 ‘동남권사업과’ (4급)로 재편하여 일반직 정원 조정 (45급 △1 → 4급 +1)
- 문화본부 박물관과의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및 ‘보이는 수장고’ 사무 관련 연구직 학예연구사 2명 증원 ※ 일반직공무원 2명 감축
- (일반직) 5급이하 △2 → (연구직) 연구사 +2
- 정책수요에 적시 대응 등을 위해 ‘전문경력관’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상향 조정 (1.5% → 1.6%, +0.1%p)
 - 행정환경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나, 현재 전문경력관 정원(1.46%, 157명)이 조례상 한계(1.5%, 160명)에 달함
 - 향후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전문경력관 추가 지정을 위해 8·9급 정원 비율을 축소하고 전문경력관 정원 비율 상향 조정
 - ▶ 8·9급(이상) : 7.0% → 6.9% (△0.1%p)
 - ▶ 전문경력관(이내) : 1.5% → 1.6% (+ 0.1%p)

[별표2]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이내)	5급 (이내)	6급 (이내)	7급 (이내)	8·9급 (이상)	전문경력관 (이내)
현 행	3.5%	16.5%	37.0%	34.5%	7.0%	1.5%
개정(안)	3.5% (-)	16.5% (-)	37.0% (-)	34.5% (-)	6.9% (△0.1%p)	1.6% (+0.1%p)

Ⅲ. 검토의견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총정원 변동 없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 동남권사업반의 동남권사업과 재편에 따른 일반직 정원 조정, ▶ 문화본부 박물관과 사무 관련 연구직 학예연구사 증원, ▶ 정책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전문경력관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 상향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됨.
- 변동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동남권사업반(45급)의 동남권사업과(4급) 재편에 따라 일반직 정원 조정[4·5급 △1 → 4급 +1]
 - 문화본부 박물관과의 연구직 학예연구사 2명 증원[(일반직) 5급 이하 △2 → (연구직) 연구사 +2]
 - 정책수요 적시 대응을 위한 전문경력관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 상향 조정[1.5% → 1.6%, +0.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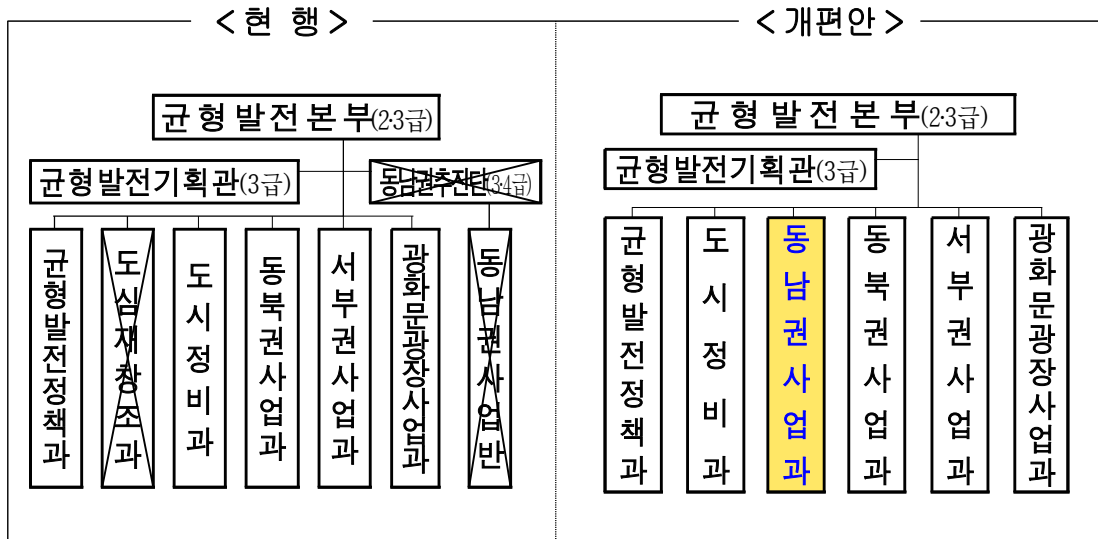
< 정원 조정 내용 >

(단위 : 명)

구 분	총 정원	정 무	일반	직 급							전문 경력관	별 정	연 구	지 도	소 방	경 찰	교 육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현 행	19,167	4	10,702	7	26	18	5	258	9	10,222	157	37	408	25	7,434	3	554
개편 후	19,167	4	10,700 (△2)	7	26	18	5	259 (+1)	8 (△1)	10,220 (△2)	157	37	410 (+2)	25	7,434	3	554

나. '동남권사업반'(4·5급)의 '동남권사업과'(4급) 재편에 따른 일반직 정원 조정(4·5급 △1 → 4급 +1)

- 동 개정안은 2024년 상반기 조직 개편안에 따라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가 신설되는 '도시공간본부'로 이관하면서 동남권추진단(3·4급)의 폐지 및 동남권사업과(4급)로의 재편에 따른 일반직 정원 조정임.



- 폐지되는 동남권추진단(3·4급)의 정원은 도시공간본부의 도시공간기획관(3·4급)으로 이관되고, 동남권사업과(4급)로 재편되면서 동남권사업반(4·5급)도 폐지되므로 4급 정원 1명이 증원, 4·5급 정원 1명이 감원됨*. * 토목 4·5급 △1, 토목 4급 +1
- 한편, 균형발전본부에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로는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19명, 도시정비과 3명 등 총 22명의 정원이 이관됨.

-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22) ※ 균형발전본부(도심재창조과 △19, 도시정비과 △3)
 - (도시재창조정책팀 +11) 토목4급 1(도시재창조과장), 토목5급 1, 건축6급 2, 토목6급 1, 행정6급 1, 녹지6급 2, 건축7급 1, 토목7급 2
 - (도시재창조계획팀 +6) 토목5급 1, 건축6급 1, 토목6급 1, 토목6급 1*, 토목7급 1*, 건축7급 1*
 -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로부터 이관
 - (세운지구활성화팀 +5) 토목5급 1, 토목6급 1, 건축6급 1, 토목7급 1, 건축7급 1

○ 다만, 이러한 정원 증감 변동은 동 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16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 여부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음.

다. 문화본부 박물관과의 연구직 학예사 증원(일반직 5급 이하 △2 → 연구직 연구사 +2)

- 문화본부 박물관과는 2025년 1월 개관 예정인 ‘서울시 문화유산 보존센터’와 2028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가칭)보이는 수장고’의 인력 보강을 위하여 연구직 학예사 증원을 요청함.
-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수장공간 확보와 체계적인 자료 보존·관리를 위해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임.

<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16.8월 ~ 2024.11월
 - ※'25년 상반기 개관 예정
- 건립부지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50
- 규 모 : 부지(44,615㎡), 연면적(9,155㎡)
- 사업예산 : 52,483백만원(토지비 2,100백만원 포함)
- 공간구성 : 수장고(6실), 개방형수장고(1실) 및 야외전시장, 보존과학실



- 이에 개관 준비 전담팀(학예연구직, 전산직, 기술직 등 6명)을 신설하고, 2024년 하반기에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인바, 차질 없는 센터 개관을 위해서는 소장품의 이관, 관리 등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기구 설치 및 정원 배정 세부 내역 >

구분	인력	업무내용	비고
1단계 '24.1월 (6명) (박물관과 소속 팀)	행정·학예연구관 1	·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업무 총괄	
	학예연구사 2	· 소장품 이관·정리 및 보존처리·연구 · 개방형수장고 및 야외전시장 전시	
	시설(건축)6급 1	· 준공, 유지공사 등 시설물 관리	
	행정·전산6급 1	· 소장품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업(기계)6급 1	· 기계설비 유지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학예) 1	· 소장품 이관·정리 및 보존처리·연구 · 개방형수장고 및 야외전시장 전시	(정원 외)
2단계 '24.7월 (2명 추가) (독립사업소)	학예연구사 1	· 소장품 이관·정리 및 보존처리·연구 등	('24년 개정 예정)
	행정6급 1	·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 등 행정 업무	
	시간선택제임기제(학예) 1	· 소장품 이관·정리 및 보존처리·연구 등	(정원 외)

※ ('24.7월) '서울문화유산보존센터'로 문화본부 내 독립사업소(5급) 설치 후 건립팀 인력에 행정, 학예연구 등 2명 추가 배치하여 최종 배정예정 ※ 별도 시선제 1명 배정

- 한편 ‘(가칭)보이는 수장고’는 소장품 전체를 전시·관람하는 개방형 수장고로, 2028년 상반기 개관을 위해 전담팀 구성이 필요한바, 소장품 배치·확보·이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점을 고려하면, 인력 증원 요청은 수긍할 여지가 있음.

< (가칭)보이는 수장고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23년 ~ 2028년 ※'28년 상반기 개관 예정
- 건립부지 : 서초구 서초동 산170-15(서리풀 공원 內 기부채납지)
- 규 모 : 8개층(지하/지상7층), 연면적 19,500㎡(주차장 4,000㎡ 포함), 대지 5,800㎡
- 사업예산 : 기부채납 건립방식
- 공간구성 : 수장 및 전시시설(전시형·개방형 수장고 / 13만점 수장), 보존과학실

< 인력 배치 세부 내역 >

구분	인력	업무내용
'24.1월 (3명) (박물관과 소속 팀)	학예연구관 1	· ‘(가칭)보이는 수장고’ 업무 총괄
	㉠학예연구사 1 (’24.1.1.~12.31.)	· 소장품 위탁 관련 서울시 각 박물관·미술관 협의 · 위탁소장품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콘텐츠 구성계획 수립
	㉡학예연구사 1	· 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인테리어 기획, 수장고 공간조성 등

- 그러나 2028년 상반기 개관까지는 4~5년의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굳이 이번 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해 증원하고자 하는 인력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서울시의 보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서울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3~2027)’에 따르면, 문화본부는 2027년까지 별도의 인력 증원 계획을 반영하지 않았는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운용으로 보기 어려움.

라. ‘전문경력관’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상향 조정(1.5% → 1.6%, 0.1%p)

- 동 개정안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경력관 정원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조례상 기준을 개정하여 향후 정책수요에 대비하고자 조례상의 전문경력관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¹⁾에 따르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서울특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2)에 따라 별표 2에서는 전문경력관의 정원 책정기준을 1.5%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6.5%이내	37.0%이내	34.5%이내	7.0%이상	1.5%이내

- 전문경력관은 일반적인 직급·직렬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담당 직무의 성격·난이도·숙련도 등에 따라 가·나·다군으로 구분되며, 현재 비상대비·민방위, 동물사육 등 18개 직무분야에 15개 직위를 운영 중임(참고자료).
- 현재 전문경력관 정원은 157명(1.467%)으로, 현행 조례의 정원책정 기준에 따른 전문경력관 정원 160명에 근접하고 있는바, 동 개정안은 향후 사육사 퇴직인력의 전문경력관 전환 수요('27년까지 11명)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상 전문경력관의 정원책정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 동물사육 분야 향후 정원 조정 계획 >

구 분	'23	'24	'25	'26	'27
조정 인원	56	62(+6)	66(+4)	-	67(+1)
조정 내역	사육운영6급 △2 → 나군 +2 임기8급 △1 임기9급 △4 → 다군 +5	사육운영7급 △1 → 나군 +1 임기8급 △2 임기9급 △3 → 다군 +5	사육운영6급 △2 → 나군 +2 임기9급 △2 → 다군 +2	-	사육운영7급 △1 → 나군 +1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②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공원 사육사 인력충원 계획³⁾에 따르면, 동물사육은 위험도가 높고 전문성 및 충분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므로 전문경력관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동물사육 업무의 특수성과 순환보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전문경력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 개정안의 상향된 기준에 따를 경우, 현행 조례상 기준인 160명(1.5%)에서 171명(1.6%)으로 11명이 늘어나게 되어 2027년까지 전환이 필요한 전문경력관 전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전문경력관 정원책정기준의 상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3) 조직담당관-10992호, 2017.8.28.

[참고자료] 전문경력관 현황(2023.11월 기준)

부서명		직무명	합계	가군	나군	다군
합 계			157	4	67	86
본 청	언론담당관	사진촬영요원	1		1	
		영상촬영제작요원	1		1	
		영화사진기사요원	1		1	
	홍보담당관	사진촬영요원	1		1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민방위요원	14	4	10	
		민방공경보통제요원	1		1	
	빅데이터담당관	통계자료관리요원	3		3	
	공간정보담당관	항공사진요원	1		1	
		항공판독요원	3		3	
	건축기획과	항공판독요원	2		2	
직 속 기 관	서울시립대	비상대비·민방위요원	1		1	
	인재개발원	영상촬영제작요원	1		1	
사 업 소	서울기록원	통계자료관리요원	1		1	
	품질시험소	위험물취급요원	1		1	
		위험물취급요원	1		1	
	중량물재생센터	고압전기 안전관리요원	2		1	1
		위험물취급요원	1		1	
	난지물재생센터	고압전기 안전관리요원	2		1	1
		비상대비·민방위요원	6		6	
	아리수정수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요원	16			16
		고압전기 안전관리요원	11			11
		고압전기 안전관리요원	8			8
	수도사업소	고압전기 안전관리요원	8			8
	동부도로사업소	고압전기 안전관리요원	4			4
	서부도로사업소	고압전기 안전관리요원	3			3
	강서도로사업소	고압전기 안전관리요원	1			1
	어린이병원	특수교사	1		1	
	은평병원	약물분석기사	2		2	
		임상심리사	2		2	
서울역사박물관	사진촬영요원	1		1		
서울대공원	동물사육요원	56		16	40	
	동물박제요원	2		1	1	
미래한강본부	한강도하관리업무	2		2		
시 의 회	시의회사무처	영상촬영제작요원	2		2	
		편집요원	2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17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민선8기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반’(4·5급)을 ‘동남권사업과’(4급)로 재편하여 일반직 정원 조정 (4·5급 $\Delta 1 \rightarrow 4$ 급 +1)
- 나. 문화본부 박물관과의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및 ‘보이는 수장고’ 사무 관련 연구직 학예연구사 2명 증원 ※ 일반직공무원 2명 감축
- (일반직) 5급이하 $\Delta 2 \rightarrow$ (연구직) 연구사 +2
- 다. 정책수요에 적시 대응 등을 위해 ‘전문경력관’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상향 조정 (1.5% \rightarrow 1.6%, +0.1%p)
 - 행정환경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나, 현재 전문경력관 정원(1.46%, 157명)이 조례상 한계(1.5%, 160명)에 달함
 - 향후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전문경력관 추가 지정을 위해 8·9급 정원비율을 축소하고 전문경력관 정원 비율 상향 조정
 - ▶ 8·9급(이상) : 7.0% \rightarrow 6.9% ($\Delta 0.1\%$ p)
 - 전문경력관(이내) : 1.5% \rightarrow 1.6% (+ 0.1%p)

[별표2]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이내)	5급 (이내)	6급 (이내)	7급 (이내)	8·9급 (이상)	전문경력관 (이내)
현행	3.5%	16.5%	37.0%	34.5%	7.0%	1.5%
개정(안)	3.5% (-)	16.5% (-)	37.0% (-)	34.5% (-)	6.9% ($\Delta 0.1\%$ p)	1.6% (+0.1%p)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3. 10. 6. ~ 10. 10.)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효원 (☎2133-6729)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 중 1. 일반직공무원의 비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율	3.5%이내	16.5%이내	37.0%이내	34.5%이내	6.9%이상	1.6%이내
----	--------	---------	---------	---------	--------	--------

별표 4의 표 중 일반직 계란, 4급란, 4·5급란, 5급 이하 소계란, 연구직 계란, 연구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00					
-------	--------	--	--	--	--	--

4급	259	154	19	8	70	8
4·5급	8	8				
5급 이하 소계	10,220					

연구직 계	410					
-------	-----	--	--	--	--	--

연구사	337					
-----	-----	--	--	--	--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2]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4급 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9급</th> <th>전문경력관</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3.5%이내</td> <td>16.5%이내</td> <td>37.0%이내</td> <td>34.5%이내</td> <td>7.0%이상</td> <td>1.5%이내</td> </tr> </tbody> </table> <p>[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처</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1,73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생략)</td> </tr> <tr> <td>일반직계</td> <td>10,70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생략)</td> </tr> <tr> <td>4급</td> <td>258</td> <td>153</td> <td>19</td> <td>8</td> <td>70</td> <td>8</td> </tr> <tr> <td>4·5급</td> <td>9</td> <td>9</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10,22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생략)</td> </tr> <tr> <td>연구직계</td> <td>40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생략)</td> </tr> <tr> <td>연구사</td> <td>33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6.5%이내	37.0%이내	34.5%이내	7.0%이상	1.5%이내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30						(생략)							일반직계	10,702						(생략)							4급	258	153	19	8	70	8	4·5급	9	9					5급 이하 소계	10,222						(생략)							연구직계	408						(생략)							연구사	335						(현행과 같음)							<p>[별표 2]</p> <p>-----</p> <p>-----</p> <p>-----</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4급 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9급</th> <th>전문경력관</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3.5%이내</td> <td>16.5%이내</td> <td>37.0%이내</td> <td>34.5%이내</td> <td>6.9%이상</td> <td>1.6%이내</td> </tr> </tbody> </table> <p>[별표 4]</p> <p>-----</p> <p>-----</p> <p>-----</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처</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1,73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현행과 같음)</td> </tr> <tr> <td>일반직계</td> <td>10,70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현행과 같음)</td> </tr> <tr> <td>4급</td> <td>259</td> <td>154</td> <td>19</td> <td>8</td> <td>70</td> <td>8</td> </tr> <tr> <td>4·5급</td> <td>8</td> <td>8</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10,22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현행과 같음)</td> </tr> <tr> <td>연구직계</td> <td>41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현행과 같음)</td> </tr> <tr> <td>연구사</td> <td>33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6.5%이내	37.0%이내	34.5%이내	6.9%이상	1.6%이내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30						(현행과 같음)							일반직계	10,700						(현행과 같음)							4급	259	154	19	8	70	8	4·5급	8	8					5급 이하 소계	10,220						(현행과 같음)							연구직계	410						(현행과 같음)							연구사	337						(현행과 같음)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6.5%이내	37.0%이내	34.5%이내	7.0%이상	1.5%이내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30																																																																																																																																																																																																																		
(생략)																																																																																																																																																																																																																			
일반직계	10,702																																																																																																																																																																																																																		
(생략)																																																																																																																																																																																																																			
4급	258	153	19	8	70	8																																																																																																																																																																																																													
4·5급	9	9																																																																																																																																																																																																																	
5급 이하 소계	10,222																																																																																																																																																																																																																		
(생략)																																																																																																																																																																																																																			
연구직계	408																																																																																																																																																																																																																		
(생략)																																																																																																																																																																																																																			
연구사	335																																																																																																																																																																																																																		
(현행과 같음)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6.5%이내	37.0%이내	34.5%이내	6.9%이상	1.6%이내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30																																																																																																																																																																																																																		
(현행과 같음)																																																																																																																																																																																																																			
일반직계	10,700																																																																																																																																																																																																																		
(현행과 같음)																																																																																																																																																																																																																			
4급	259	154	19	8	70	8																																																																																																																																																																																																													
4·5급	8	8																																																																																																																																																																																																																	
5급 이하 소계	10,220																																																																																																																																																																																																																		
(현행과 같음)																																																																																																																																																																																																																			
연구직계	410																																																																																																																																																																																																																		
(현행과 같음)																																																																																																																																																																																																																			
연구사	337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총 정원 변동이 없어,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박효원 (☎ 2133-6729)